

무배당 교보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약관

무배당 교보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보험 약관

제 1 조 (약관의 목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‘법’이라고 합니다) 제 29 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합니다)와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(이하 “이 계약”이라 합니다)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1. “신탁업자”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.
 2. “보험료”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(이하 “계약자”라 합니다)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 3. “보험금”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령”, “시행규칙”이라 합니다)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3 조 (보험기간)

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.

제 4 조 (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)

이 계약의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니다.

제 5 조 (신탁업자의 수행업무)

- ①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(법 제 28 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)이 전달한 가입자(법 제 2 조 제 11 호에서 정한 가입자로 이하 “가입자”라 합니다) 또는 사용자(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한 사용자로 이하 “사용자”라 합니다)의 운용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.

제 6 조 (회사의 수행업무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

1. 보험료의 수령
2. 적립금의 운용
3.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 7 조 (보험료의 납입)

-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
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합니다.

제 8 조 (적립금의 운용)

- ①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합니다.

제 9 조 (계약의 성립)

-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.

제 10 조 (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등)

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 약관과 청약서(청약서 부분<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>)를 전달하고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. 다만,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(청약서 부분)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(청약서 부분)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,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사이버몰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)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11 조 (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)

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(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)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.

제 12 조 (배당금의 지급)

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.

제 13 조 (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)

-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,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「적용이율+1%」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관련 법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4 조 (중도해지)

-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-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 17 조(해지환급금)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-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.
 - 1.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
 - 2.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
 - 3.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4.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
 - 5.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
 - 6.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
 - 7. 법 제 22 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
 - 8.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경우
 - 9.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
 - 10. 법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반환되는 경우
- ④ 제 3 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.

제 15 조 (단위보험)

-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“단위보험”을 설정합니다. 이때,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“이율보증기간”이라 합니다.
- ②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(1 년, 2 년, 3 년, 5 년)을 설정하며,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

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‘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.

-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.
-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.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16 조 (적용이율의 적용)

- ①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. 이때,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.
-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“사업방법서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결정합니다.

[적용이율]

회사가 장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. 회사는 매월 1일의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용이율을 결정하며,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합니다.

[기준이율]

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합니다.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, 회사채수익률, 지방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. 다만,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1년 이율보증형

• 지표금리(%) = $0.3 \times A1 + 0.7 \times A2$

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회사채(1년만기, 무보증, AAA) 수익률의 평균값

※ 2년 이율보증형

• 지표금리(%) = $0.7 \times A1 + 0.3 \times A2$

A1 : 국고채(2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회사채(2년만기, 무보증, AAA) 수익률의 평균값

※ 3년 이율보증형

• 지표금리(%) = $0.7 \times A1 + 0.3 \times A2$

A1 : 국고채(3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회사채(3년만기, 무보증, AAA) 수익률의 평균값

※ 5년 이율보증형

• 지표금리(%) = $0.8 \times A1 + 0.2 \times A2$

A1 : 국고채(5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A2 : 지방채(5년만기) 수익률의 평균값

제 17 조 (해지환급금)

- ①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, 회사는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. 이때,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「적용이율×50%」로 적용하며, “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”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1.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
 2.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±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

제 18 조 (선관주의 의무)

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품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
제 19 조 (계약의 승계)

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
제 20 조 (분쟁의 조정)

이 약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21 조 (약관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 다만,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, 계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,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계약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.
-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해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규에서 변경한 경우에는

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 이때,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,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 22 조 (조항해석 및 관할법원)

- ① 이 약관의 조항해석에 관해 계약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.
-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제 23 조 (소멸시효)

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제 24 조 (관련 법규 등의 준용)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(보험업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)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 25 조 (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)

-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.

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17 조(해지환급금)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.

제 26 조 (회사의 손해배상책임)

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,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관계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
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,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
제 27 조 (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)

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. 다만,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.